



2015 Winter

건강한 금융생활정보가이드

2015 WINTER

CONTENTS

I 긴급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 1. 신용카드(체크카드) 분실 및 위변조..... 3
- 2. 개인정보 유출..... 4
- 3. 보이스피싱,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 5
- 4.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6
- 7. 예금통장 등 분실..... 7
- 8. 대출사기 8
- 9. 불법대출여부..... 9
- 10. 대학생 금융대출사기 10

II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상식

- 1. 휴면 예금·보험 조회..... 12
- 2.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제도..... 13

III 금융사기 피해시 대처요령

- 1. 금융사기 피해시 대처요령..... 15
- 2. 금융사기 및 금융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16

IV 현명한 저축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TIP 5

- 1. 현명한 저축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TIP 5..... 20

V 올바른 금융거래를 위한 금융소비자 실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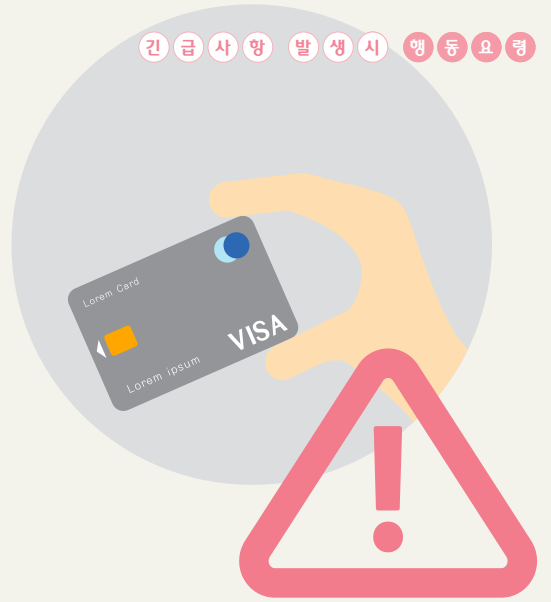
- 1. 통장을 개설할 경우..... 23
- 2. 예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할 경우..... 23
- 3. 예금통장 등을 분실(도난)했을 경우..... 24
- 4. 정기예·적금 상품을 가입할 경우..... 24

I 긴급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 신용카드(체크카드) 분실 및 위변조
- 개인정보 유출
- 보이스피싱,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
-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 예금통장 등 분실
- 대출사기
- 불법대출여부
- 대학생 금융대출사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분실 및 위변조



○ 카드 분실시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하십시오.

-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이미 결제 되었다면 카드회사에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 '15.05.26일 분실신고시 3.27일 매출발생분부터 보상가능)
-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또는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등 카드 주인의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현금인출,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의 경우 분실신고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회사가 책임지지 않으니 비밀번호에 철저를 기하셔야 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의 위협으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신용카드 등의 위변조,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카드회사가 책임집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 방법

본인이 발급받은 신용카드 조회방법은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또는 신용조회 회사를 통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발급받은 신용카드 현황)를 조회할 수 있으며, 대출정보, 연체정보, 신용조회정보, 카드개설정보, 신용등급 및 신용점수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

신용조회 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신용조회 회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 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전국은행연합회 등)

개인 정보 유출



○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 하십시오.

-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TEL 118, Privacy.kisa.or.kr) 또는 '주민등록 번호클린 센터'(clean.kisa.or.kr)를 통해 신고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 하십시오.

- 개인정보 노출시 은행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되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되면 금융회사에 전파되어 금융거래 발생시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에 유의하게 되므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불법유통 사실 발견시 적극 신고 하십시오.

- 신고내용을 평가하여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TEL 1332 → 3번(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금융감독원홈페이지 (www.fss.or.kr) → 참여마당 →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피싱,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청(TEL 112), 금융감독원(TEL 133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십시오.
-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 사실확인서) 작성 후 수령 하셔서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셔야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계좌에 잔액이 있을 경우 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이내에 송금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입금계좌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잔액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가 협력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하여 줍니다. (약 3개월 정도 소요)
- 보안카드 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여 노출한 번호를 해지 및 폐기하신 후 새로 발급 받으셔야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 카드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정보유출관련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카드 비밀번호, 본인인증코드(CVC)등 중요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답변하지 말고 바로 끊어버리세요.
-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거래 내역이 휴대폰 메시지로 통보되는 경우 즉시 카드회사에 확인하십시오.
- 보안카드보다 보안성이 높은 보안매체(OTP)를 이용하고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십시오.
- 평소 휴대전화 소액결제 미이용시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서비스를 차단하십시오.

예금통장 등 분실



○ 예금통장, 도장,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 분실

- 예금통장, 도장,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을 분실(도난)했을 경우 즉시 전화로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금융회사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시간 등을 기록해 두십시오.
- 현금카드를 분실(도난)했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예금계좌도 변경해야 안전합니다.

○ 휴대폰(스마트폰) 분실

- 휴대폰에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경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십시오.
- 모바일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있는 경우 즉시 카드회사에 연락하여 사용중지를 요청하십시오.

대출사기



○ 대출시에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면 100% 대출사기입니다.

- 최근에는 대출서류까지 작성하여 안심시켜 놓고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하는 사기도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도 불법입니다.
- 유명업체를 사칭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전화번호로 직접전화를 걸어 확인 하십시오.
- 대출모집인일 경우 정식등록 여부를 ‘대출모집인 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 TEL 02-3705-5000)에서 확인 하십시오.

○ 대출사기 발생시 및 대출수수료 요구시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TEL 1332→3번)에 신고 하십시오.

-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 참여마당 →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불법사금융 •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 대출사기 2차 피해 사전예방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또는 은행 영업점 직접방문)
- 휴대폰명의로용방지 : www.msafes.or.kr (TEL 02-580-0514)에서 가입 및 확인
- 주민번호이용내역 : clean.kisa.or.kr(TEL 118)에서 확인

불법 대출여부



○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하십시오.

[금융감독원(TEL 1332) 및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담당자에게 문의]

→ 등록대부업체 조회는 서민금융1332(s1332.fss.or.kr)에서도 가능.

-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이자율 위반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확률이 낮은편이므로 등록된 대부업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 하십시오.

○ 고금리 입증을 위해 계약서, 변제내역을 보관 하십시오.

- 법정최고이자율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낼 때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와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법고금리 여부 확인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s1332.fss.or.kr)에서 조회

- 대출이자율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의 이자계산기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대학생 금융대출사기



○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대출사기 빈발

- 취업난, 등록금 부담 등 대학생을 상대로 한 취업 및 장학금 등을 미끼로 하는 금융대출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학생의 각별한 주의 필요합니다.

○ 금융대출사기 예방 방법

-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가 장학금 지급, 취업, 투자 등을 미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금융사기를 당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 사기범에 속아 직접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금을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 대출금 상환책임이 본인에게 있어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우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1332 → 3번)으로 문의하십시오.

II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상식



- 휴면 예금 · 보험 조회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제도

휴면 예금 · 보험조회



○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또는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면계좌 통합조회” 란을 클릭한 후 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 인터넷 사용이 곤란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은행, 보험회사 또는 우체국 점포를 방문하여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휴면계좌조회를 요청하면, 조회결과를 현장에서 서면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제도



○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등)의 금융거래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상속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처*에 직접 방문
 - * 금융감독원본원 · 지원 · 출장소, 은행, 우체국, 삼성생명, 유안타증권,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삼성화재
- 구비서류
 -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3개월내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신분증
 - ※ 대리인이 신청시 상속인의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등 첨부)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결과확인
 - 신청일로부터 3~15일 내에 금융협회가 문자메세지로 결과를 통보하며,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결과를 확인 가능

Ⅲ

금융사기 피해시 대처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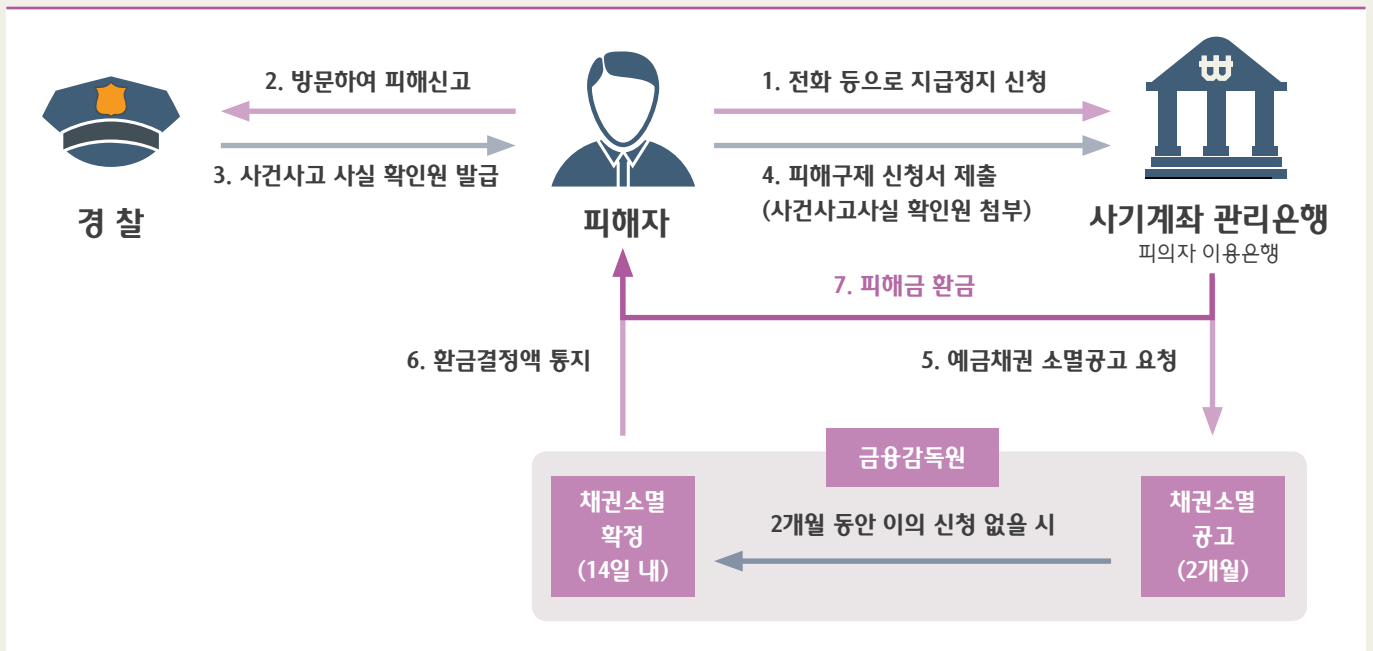
- 금융 사기 피해시 대처요령
- 금융 사기 및 금융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금융사기 피해시 대처요령

○ 금융거래정보가 노출되거나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입금한 경우

- 경찰청(TEL 112), 금융감독원(TEL 133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로 즉시 전화하여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경찰에 피해 신고후,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피해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발생시

- 해당 거래 결제대행사의 고객센터,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TEL 1335) 또는 휴대전화 ARS 결제 중재센터(TEL 1644-2367) 등에 결제 취소·환불을 요구합니다.
-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소액결제를 차단해야 하며 악성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초기화합니다.
- 휴대전화의 보안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환경설정 → 보안 → 알 수 없는 출처 → 허용 안함

금융사기 및 금융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금융사기 유의사항

- 무작위로 발송되는 투자권유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은 무시합니다.
 -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현혹되어서 투자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서는 안되며, 타인에게는 절대 개인정보와 통장 등을 넘겨주면 안됩니다.
 -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등급, 채무이력 등을 고려하여 대출을 결정하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 타인에게는 개인정보와 통장 등을 절대 공유해선 안됩니다.
- 지인 등이 문자메시지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임을 확인 후 송금합니다.
 - 지인 등이 문자메시지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지인을 사칭한 사기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송금전 지인으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문자메시지에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나 앱 설치 링크 등이 있을 경우 절대 클릭 및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 불특정 다수에게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감염되어 소액결제 또는 금융거래정보 등을 빼가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통신사 콜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액결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보장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시 아무 심사절차 없이 무조건, 누구나(직업 및 병력 불문)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무심사 보험은 보장내역이 일정수준 이하의 사망보험금 뿐입니다.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은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납입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보장보험'등 상품명을 오인하여 질병을 보장받기 위하여 가입하였으나 실제 보장내용이 질병보장은 없이 재해·상해·사망을 보험금 지급내용으로 하는 상품인 경우가 있습니다.

○ 청약서·청약녹취상 계약전 알릴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입니다
- 전화가입시 5년 이내 병력사항 등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해피콜 등 보험계약을 다시 확인하는 전화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하는 경우 추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질문을 잘 듣고 되묻는 등 반드시 질문을 이해하고 답해야 합니다.
- '간편심사' '무(건강)진단' 등 가입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광고하는 보험 가입시에도 병력을 정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이 용이하다더라도 갱신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갱신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약관상 특정 사유 발생시 갱신이 안된다고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전 거절사유 유무를 약관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갱신시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갱신시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 금융투자상품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이 따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부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증권회사 직원에게 매매 거래를 위임하더라도 투자 손익은 고객 자신에게 귀속되며, 투자 원금의 보장 또는 손실 보전 약속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유의 하십시오.

○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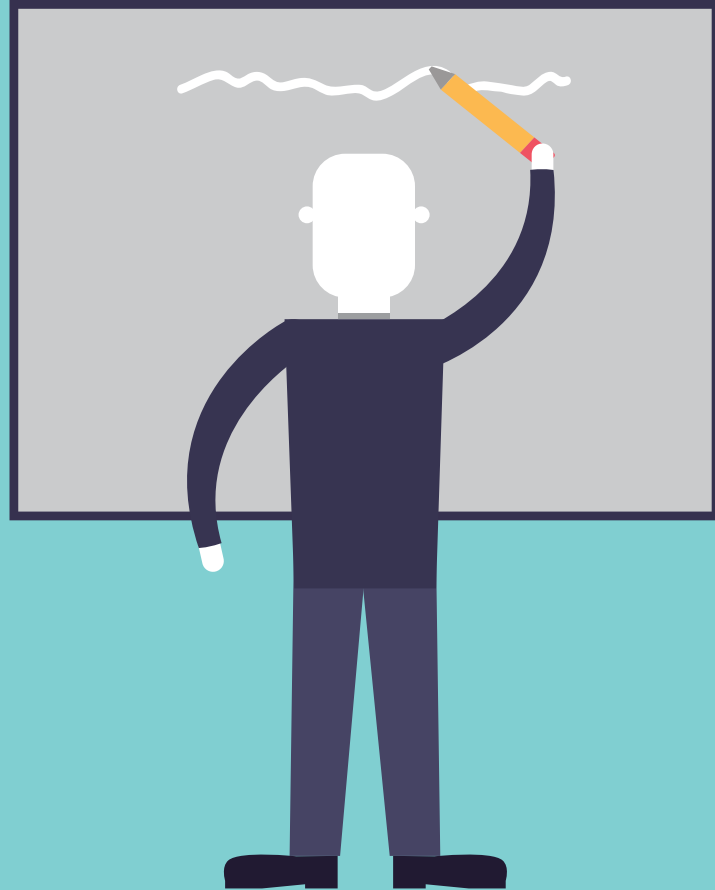
-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르므로 투자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은 단기간에 투자금액 또는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 거래 제도의 특성, 위험 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계좌 관련 정보, 증권카드 등은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HTS 아이디 등을 남에게 알리거나 증권카드, 보안카드 등을 남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 주소,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권회사에 반드시 통보하여 권리행사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IV

현명한 저축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TIP 5





현명한 저축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TIP 5

1. 주거래 은행을 정하세요.

- 거래 은행을 선택하여 예·적금 가입, 급여계좌 등록 등을 하면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별 주거래은행시 제공하는 혜택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상품가입시 금리, 우대혜택 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 금융상품 가입시 가입목적, 금액, 만기 등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적으로 정기적금보다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으며, 예치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도 높아집니다.
- 예·적금, 펀드, 보험상품의 금리, 수익률, 보험료 등을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는 각 금융협회 비교 공시 등을 적극 활용 하십시오.
- 한편 펀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적금보다 단기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등 수익의 변동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자기책임하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세요.

-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비과세상품 및 세금우대상품을 이용하여 예금이자에 부과되는 세금 (15.4%*) 을 절감하는 재테크가 유용합니다.
 - * 이자소득세(14%)와 주민세 등(1.4%)
- 또한, 소득공제용 금융상품 가입 및 체크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챙기기 등을 통해 연말 정산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금리 변동내역 및 만기시 SMS 알림서비스를 활용하세요.

- 정기예·적금, 펀드 등의 금리변동, 수익률, 만기 등을 고객에게 SMS, 이메일 등으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 하십시오.
- 정기예·적금의 약정 금리는 만기까지만 적용되므로 만기시 바로 찾아서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해 수수료를 절약하세요.

- 일반적으로 창구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가장 높고,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낮습니다.
- 급여이체, 휴대전화 요금 이체 등 우대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금융상품 등도 적극 활용 하십시오.

V

올바른 금융거래를 위한 금융소비자 실천사항



- 통장을 개설할 경우
- 예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할 경우
- 예금통장 등을 분실(도난)했을 경우
- 정기에 · 적금 상품을 가입할 경우

통장을 개설할 경우

예 · 적금 가입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 하십시오.

- 금융실명제를 위반하여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 및 금융거래 제한 등이 있으므로 유의 하십시오.

대포통장 명의인(통장을 빌려준 자) 등록에 따른 각종 불이익



법상 처벌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금융거래 제한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계좌에 대한 비대면 거래 제한

금융거래 참고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시 통장 양도 이력 고객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

금융질서문란자 등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15.4.13.)의 일환으로 악의적인 대포통장 명의인을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

예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할 경우

예금을 입금할 때에는 은행 직원이 통장 또는 입금의뢰서와 현금을 받아 확인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하며, 인출할 때에도 창구에서 현금 및 통장상의 인출 금액을 꼭 확인하십시오.

또한, 인터넷뱅킹 · ATM 등 이용시 입력 실수로 다른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되어 수취인 동의 없이 은행이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 은행은 수취인에게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이 가능하며,
- 수취인이 이를 거절할 경우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을 통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 이 때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은 수취인이므로, 거래은행 또는 수취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통장 등을 분실(도난)했을 경우

- 예금통장, 인감 등을 분실(도난)했을 경우, 즉시 은행에 신고하고 은행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신고 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현금카드를 분실(도난)했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카드번호, 예금계좌도 변경해야 보다 안전합니다.

정기예·적금 상품을 가입할 경우

- 통상 예·적금은 예치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가 지난 정기예·적금의 경우에는 장기간 예치할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되어 소비자에게 불리합니다.
- 정기예·적금의 약정 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되며, 만기경과 시점부터는 약정이자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품가입시 가입기간별 금리 및 우대금리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만기 후에는 바로 찾아서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한편, 은행에서도 보험상품(방카슈랑스)을 판매하므로 금융상품 가입시 자신이 가입하는 상품이 적금인지, 보험인지 정확하게 확인 후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상품은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하며, 보험은 적금처럼 일정 금액을 매달 납입하지만 중도 해지시 원금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